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30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22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II.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1년도 말 조성액 (a)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 말 조성액 (d=a+b-c)	용자금 미회수채권 (e)	총 규모 (f=d+e)
		조성계획 (b)	집행계획 (c)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	967,870	-	967,870	-	967,870

III. 검토내용

-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20년 7월,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정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자 회계연도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임
- 관련 법령은 기금을 운용하기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을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제출된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부의 관련 기준에 따라 ①운용총칙과 ②자금운용계획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 ①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등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②자금운용계획에는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출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1) 기금 조성 개요

-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22년도에 9,678억 7,000만원을 조성하여 사용계획없이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계획한 것으로 금년도말 조성액을 9,678억 7,000만원으로 운용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표 3-1〉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

(단위 : 백만원)

'21년도 말 조성액 ①	'22년도 조성계획		'22년도 말 조성액 ④=①+②-③
	조성계획 ②	사용계획 ③	
-	967,870	-	967,870

- 아울러 동 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나,

-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안정화 계정’만 우선 운용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제출하였음

(2) 기금 수입계획

- **수입계획**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9,620억원)과 **이자수입**(58억 7,000만원)을 계획한 것으로

- **전입금**(9,620억원)은 지난 7월 13일 시의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중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기금적립)에 기금전출금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관련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자수입**(58억 7,000만원)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이 '22년 12월까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예치기간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금융상품으로 관리하는 등 **이자수입** 관리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교육청 소관 기금의 **이자수입**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시정 요구가 있었고, 실제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통예금으로만 관리하여 수익성을 제고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바,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도 실제 이자수입이 당초 수입계획보다 현저히 적어 ‘장부상 미수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자수입을 계획함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장	관	항	수 입 과 목	'22년 수입액 (A)	'21년 수입액 (B)	증 감 (A-B)							
합			계	967,870	-	967,870							
자	체	수	입	5,870	-	5,870							
	이	자	수	입	5,870	-	5,870						
		이	자	수	입	5,870	-	5,870					
		예	금	이	자	수	입	5,870	-	5,870			
내	부	거	래	962,000	-	962,000							
	전	입	금	962,000	-	962,000							
	전	입	금	962,000	-	962,000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전	입	금	962,000	-	962,000

(3) 기금 지출계획

- **지출계획**의 경우, 정책사업인 **예비비 및 기타**에 예치금 항목으로 9,678억 7,000만원 전액을 계상한 바,

- 예치금은 기금의 고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유동적인 지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과목으로 관련 조례는 동 계정의 용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의 적립성 기금일 수 밖에 없는 바,
- 적립성 기금은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에 따라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 할 수 있어 동 기금의 지출계획의 경우에도 예비비 1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기금사업의 잠재적 수요를 고려하여 여유재원을 **예치금**으로 지출계획

한 것이나, 결과적으로 세부사업인 ‘내부유보금’으로 9,678억 7,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 행정안전부가 기금은 예기치 못한 수요 발생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비 부족분 충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비비 편성을 금지하고 있어 예치금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한 것은 적정과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예치금이 적정 예산과목으로 편성되도록 교육부에 사업별 예산구조에 대한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3〉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지 출 계 획						'22년 지출액 (A)	'21년 지출액 (B)	증 감 (A-B)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목			
예		비		비	비	967,870	-	967,870
	예	비		비	비	967,870	-	967,870
		예	비	비	및 기 타	967,870	-	967,870
			예	비	비	967,870	-	967,870
				내	부	유	보	금
					예	967,870	-	967,870
					치	967,870	-	967,870

(4)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반영 검토

- 관련 법령은 자치단체가 매년 수립하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기금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총괄부서가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안을 작성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